

의안번호	2211852
의 퇴 인	김은혜 의원
회 답 일	2025.08.14.
추계번호	25E41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－ 중고폰 안심거래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
신설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안심거래사업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10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695억원(연평균 1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19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76억원 감소 예상
 - 개정안의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은 대상 취득 금액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: 부가가치세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(안 제 108조)	-110	-146	-146	-146	-146	-695	-139
- 국세(74.7%)	-82	-109	-109	-109	-109	-519	-104
- 지방소비세(25.3%)	-28	-37	-37	-37	-37	-176	-35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	○ 안심거래사업자¹⁾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및 중고품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- 적용기한: 2030년 12월 31일 - 공제율: 10/110	-

1)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자 보호 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중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할 수 있다. (「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」 제9조의2)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제108조(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)	○	○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 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신설
		×	○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 － 자료가 집계되지 않아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우므로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액은 ‘취득가액 × 공제율(10/110)’로 추정
 - 해당 사업자의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자료) 자료를 활용하며, 최근 평균 금액 수준이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전제
- 개정안은 중고품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안도 포함하고 있으나, 중고품의 범위 및 해당 취득가액 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므로 동 추계에는 포함하지 않음
- 개정안의 부칙을 참고하여 세수효과가 2026년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의 취득가액 규모는 2024년 1,976억원, 2025년 상반기 620억원 수준으로 집계됨

[표 2]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취득가액 규모
(단위: 억원)

	2024	2025년 상반기
취득가액	1,976	620

주: 6개 인증사업자의 취득가액 금액을 기준으로 함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자료

- 최근의 취득가액 실적을 바탕으로,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 공제액은 2024~2025년 연평균 146억원 수준으로 추정함
 - 2025년 취득가액의 경우, '2025년 상반기 실적×2'로 추정함
 - 매입세액공제액은 '취득가액×개정안의 공제율(10/110)'로 산출

[표 3]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 시 세수효과 추정
(단위: 억원)

	2024	2025(추정)	연평균
취득가액(a)	1,976	1,240	1,608
매입세액공제액(a×10/110)	180	113	146

주: 2025년 취득가액은 2025년 상반기 실적이 하반기에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

- 안심거래사업자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수는 2026년 110억원 등 2026~2030년 5년간 총 695억원(연평균 139억원) 감소할 것으로 추계
 -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므로, 당해연도 귀속분의 경우 당해연도에 3/4 징수, 차년도에 1/4 징수되는 것으로

전제하여 연도별 세수를 추정함

- 2026~2030년 국세인 부가가치세(74.7%)는 총 519억원, 지방소비세(25.3%)는 총 176억원 감소 예상
- 개정안의 중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신설은 대상 취득 금액 자료 등의 부재로 추계에 포함하지 않음

[표 4] 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 시
세수효과: 2026~2030년, 징수 기준

(단위: 억원)

	2026	2027	2028	2029	2030	누적	연평균
안심거래사업자가 취득한 중고이동통신단말장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신설(안 제108조)	-110	-146	-146	-146	-146	-695	-139
- 국세(74.7%)	-82	-109	-109	-109	-109	-519	-104
- 지방소비세(25.3%)	-28	-37	-37	-37	-37	-176	-35

IV. 부대의견

☐ 없음

V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1과	김효경	박연서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김효경	02-6788-4647	hkkim@assembly.go.kr